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4. 7. 9.(수) 09: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

##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09시 0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40명이 신청하였습니다.

###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4년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지난 회의·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26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3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고안건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의무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현재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홈페이지, 점포·사무소안, 간행물·소식지·청구서, 전자적 표시방법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미흡한 전자적 표시방법을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누출 신고기관 추가안입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누출 등 신고이관에 방송통신위원회 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추가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시행령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추가하고 24시간 내에 통지·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의 암호화 대상 개선입니다. 현재 개인정보 취급 시 비밀번호와 바이오정보는 일방향 암호화 저장, 주민등록번호·계좌정보 등 금융정보는 (양방향)암호화 저장토록 하고 있으나, 바이오정보를 암호화 대상으로 변경하고, 현실변화에 따라 암호화 대상의 추가·변경이 용이하도록 암호화 대상을 고시로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개인정보 유효기간 조정입니다. 현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3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파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법정 손해배상 청구기간 규정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고 청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바 있습니다. 이용자가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본인확인제 위헌결정에 따른 조문 삭제입니다. 본인확인제 위헌결정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해당 시행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는 기존 거래관계의 유효기간 규정입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 13호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매체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시행령 제 61조제1항의 매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신자의 사전 동의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바, 수신자의 피해를 고려하여 전송 가능 기간을 ‘해당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별도의 동의없이 야간에 광고전송 가능매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야간시간대(21시~익일 08시)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에게 수신동의 외에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야간시간의 광고에 의한 수신자의 불편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자우편을 별도의 수신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매체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는 광고 전송 시 표기의무 사항 개선입니다. 광고 전송시 표기의무 준수 대상 매체가 “전자적 전송매체”로 일원화됨에 따라 불필요한 매체 구분(“전화”)을 삭제하고 전송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외 전자적 전송매체로 구분하여 명시사항과 방법을 간명하게 규정하고 광고 표기의무 위치를 ‘광고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통일하는 한편, ‘성인광고’ 명시 의무를 삭제하는 등 표기의무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열 번째 수신동의 등 처리결과의 통지 규정입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수신동의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 등의 내용과 의사표시일자, 처리결과를 수신자가 선택한 매체를 이용하여 14일 이내에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정기적인 수신동의 유지 의사 확인 규정입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수신동의 유지 의사를 확인토록 한바, 수신동의 유지 의사는 2년 주기로 확인하되,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 일자 및 수신에 동의한 내용,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안내토록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상한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이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정 내용은 아래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정하고, 세부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위원회 보고 후에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7~8월 중에 하고, 규제위 심사 및 위원회 의결을 9~10월 사이에 한 후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해서 11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간단히 질문 2가지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번 개인정보의 암호화 대상 개선에 대해서 지금 현행 법률에는 바이오정보도 일방향으로 하지만 암호화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단순히 질문입니다. 여기에 설명해 놓은 이야기가 법률에서 암호화를 의무화해 놓은 바이오정보를 시행령으

로 위임해서 나중에 정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암호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인지….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금 일방향 암호화 대상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 암호화 대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 표현을 조금 더 풀어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번째, 과징금 문제,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그런 사고가 발생한 사업자들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패널티를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인 경우 현행 0.9%를 개정안은 2.7%씩, 보니까 현행보다 대략 3배씩, 그러니까 맥시멈(maximum)이 1%에서 3%로 되니까 그루핑(grouping)해서 각각을 또 3배씩 상향 조정했는데 의견 협의과정에서 이런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인 경우에 한해서 3%까지 부과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도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 결국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적용을 받아야 할 사업자들이 개정된 법률내용, 그리고 개정하려고 하는 시행령안 내용을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이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홍보 내지 교육 내지는 계도, 나중에 적용이 잘 되려면 처음 개정안 단계에서부터 이 내용을 잘 알고 현실적으로 실행이 곤란하거나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그래야 이 규정에 대한, 법령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관심도 많아지게 해서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이 법령대로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의견수렴'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홍보, 교육, 계도, 이해도 제고, 이해 확산, 인식 제고 이런 것으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지적하신 <3>번 관련해서 그 표현이 현재 개인정보 취급 시 비밀번호와 바이오정보는 일방향 암호화 저장, 주민등록번호·계좌정보 등 금융정보는 암호화 저장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바이오정보를 암호화 대상으로 변경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양방향 암호화 대상으로 변경하고' 이런 의미인 것이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법에는 양방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지금 시행령에는 양방향이라는 말이 들어갑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시행령에도 양방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시행령에도 없습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바이오정보는 암호화 저장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방향 암호화 저장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시행령에도 양방향이라는 말이 없습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방향이라는 말은 있고 양방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시행령에는 일방향 암호화, 그냥 암호화 그 2가지 용어가 있습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암호화라고 하면 그것은 양방향 암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질문했던 것은 예를 들면 암호화 대상 정보를 법률에 정하는 방법이 있고, 시행령에 정하는 방법이 있고, 고시로 위임해서 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일방향으로 암호화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있고, 양방향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이렇게 구체화 되어 있는 암호화 대상을 시행령 내지는 고시로 내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측면 하나와 일방향이나, 양방향이나 하는 것을 이 법을 준수해야 할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필요하면 시행령에 조문작업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의견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번 과징금 부과기준과 관련해서 최대 매출액의 3%까지인데 개정안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도 2.7%로 기준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과기준율을 일단 정한 이후에 그 가중사유를 통해 3%까지 과징금 부과액이 상향될 수 있습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지금 2.7%까지 나와 있는 것은 기본 과정금에 대한 부과기준율이고, 그 이후에 의무조정 과정금이라는 것이 있고, 또 임의조정 과정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50% 이내에서 가중되기 때문에 충분히 3%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그냥 이대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른 의견 없으신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9>번째, 광고 전송 시 표기의무 사항 개선에 보시면 마지막 줄에 “‘성인광고’ 명시 의무를 삭제하는 등 표기의무 사항을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맥만 보면 단순히 성인 광고 명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성인광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포함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당초 성인광고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청소년에 대한 성인광고 전송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망법 제42조의2에 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라는 별도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광고에 대해서는 꼭 굳이 광고 외 ‘성인’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형태로 개정안에 넣은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도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복규제 폐지 차원에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조항만 본다면 여성가족부나 청소년보호 관련 단체, 학부모단체 등에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와 관련해서 소홀해지지 않느냐는 우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발표하실 때 관련된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안건은 아까 <3>번에서 설명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추후 보충하고, 또 <9>번에서 마찬가지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충하기로 하고,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접수하겠습니다.

**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안건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개정 이유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14년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고시를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는 지난 5월 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고, 5월 16일~6월 25일까지 동법 시행령에 대한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바 있습니다. 7월 3일 동법 시행령 제정안 자체 규제심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고시 제·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입니다.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입니다.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하여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상한액 범위를 고시하고, 구체적인 상한액은 방통위가 결정하여 공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원액 상한의 조정과 관련하여 방통위는 상한액을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으며,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기간을 단축 가능한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고시 제정안입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입니다. 먼저 이통사는 단말장치명,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통사는 공시 관련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하여야 하며, 방통위 등에 공시 관련 정보를 공시일 전에 서면 또는 인쇄가 가능한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통사의 공시 관련 정보 및 추가 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입니다. 긴급중지명령의 세부 적용대상과 관련해서 방통위는 중지시 필요한 조치로써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불복절차 관련해서 사업자는 긴급중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방통위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토록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세부기준」 제정안입니다. 먼저 산정 절차는, 과징금은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및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산정하고, 기준금액은 사업자의 위반행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필수적 가중은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가중한 금액을 합산하고, 추가적 가중·감경과 관련해서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고의·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입니다. 대상 사업자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을 추가하고,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 개정안입니다. 대상 사업자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을 추가하고,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위원회 보고를 마친 후에 행정예고 및 관계 부처협의, 규제위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9월 중에 의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논의의 효율을 위해서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선 나누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1>번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과 관련하여 먼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이 사안 자체에 대단히 관심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도 이해관계자 간에 상당히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개별 사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저의 기본적인 입장을 먼저 말씀 드리고 심의를 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선택은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관련하여 보조금 상한선 재설정,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 도입, 그리고 분리요금제 등 각 쟁점별로 이동사, 제조사, 판매점, 이용자의 입장이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단말기유통법 입법 취지를 보면 이 법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최종적으로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3가지 정도를 저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말기유통법 고시 입법은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요금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것을 정책목표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조금 상한 수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납부하는 비용은 결국 단말기 할부금과 이용요금이라고 가정할 때 단말기 할부금과 이용요금은 서로 상충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용요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보조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한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사의 마케팅 경쟁력을 촉진할 수 있는 자율성 보호가 동시에 요구됩니다. 즉, 단말기 보조금 경쟁은 지양하되 이를 대신하여 요금 등 이동사의 마케팅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저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여기에는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로 고시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휴대폰 단말기는 이제 국민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생필품이고, 또 전기나 수도, 쌀에 못지않은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요금을 관리·통제하는 것처럼 엄격하게 국민생활을 들여다보면서 관리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작년 말 현재 이동가입자가 5,400만입니다. 그중에 스마트폰이 3,700만입니다. 물론 한 사람당 2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전 국민 인구수와 딱 맞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생필품 못지않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관리하는 것 이상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휴대폰 없이 일상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엄정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보조금 상한액이 결정된 것이 5년 안팎 지났다, 단말기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 당시에 50~60만원 선이었는데 지금은 80~90만원 선이다, 그래서 보조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시장의 요구, 또 이용자들의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올려주면 단기

적으로 소비자, 이용자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상한액을 올리면서 나타날 정책의 결과를 가능하면 정확하게 근거 있게 예측한 뒤에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조금 상한액을 올리면 그만큼 통신시장은 인플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을 올려서 마케팅 경비가 많이 들어가면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생리상 자신들의 수익을 보조금, 마케팅비에 빼기면 다른 데서 수입을 찾을 텐데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결국은 단말기 가격과 통신이용료에서 부가적인 수익을 찾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보조금을 올리면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2~3년 뒤에는 분명히 통신비 인상요인으로 전이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나 어떤 그룹에서 보조금을 올려달라고 요구가 있지만 그것이 미치는 정책적 영향, 결과를 예측해 보면 이것은 분명히, 또 이용자라는 개념도 그냥 포괄적으로 거시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사회계층적으로 어떤 이용자냐? 고소득층이냐, 저소득층이냐? 고가품 이용자냐, 저가품 이용자냐? 식자층이냐, 영세계층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며, 어떤 계층은 차별받는 것이냐 하는 것을 사회계층적으로 분석적으로 들여다본 뒤에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선 시장의 요구, 압력도 있습니다. 또 기대하는 이용자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향 조정 아니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가계통신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OECD 회원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지요. 중장기적으로는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을 일관되게 펴야 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올리는 그 보조금 상한액이 중장기적인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에 역행하거나 크게 부담되는 정도로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선에서 시장의 요구와 일부 이용자들의, 어떤 층의 기대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정책목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에 제출된 상한액의 범위를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우선 고시하고, 구체적인 상한액을 차후에 방통위 회의에서 결정해 나간다는 방법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액수는 기존 27만원, 이것이 정해진 내용은 이통사의 예상수익과 제조사의 예상수익이 있고, 18만 몇 천원씩 각각 되는 것이지요. 합치면 36만 몇 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또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상인들의 마진이 있습니다. 마진이 1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빼주어야 전국 6만여 개에 달하는 대리점, 판매점들의 유통마진이 보호됩니다. 그런 선에서 적정히 정해야 하는데 저는 오늘 제시된 25만원에서 35만원 선은 어느 정도 검토할 수 있다, 적정한 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참고로 사무처에서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로 상한액 범위를 고시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상한액은 방통위가 결정하도록 안을 만들었는데 이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로 결정한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수치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25만원에서 35만원의 근거는 이통3사의 가입자당 평균 예상이익과 그다음에 제조사들이 이통사를 통해 대리점에 주는 장려금의 규모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파악해서 합친 것을 최대금액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금액 중에 아까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

리점들이 먹는 마진 정도를 뺀 것을 하한으로 해서 그런 정도를 기준으로 25만원에서 35만 원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2010년에 제1기 방통위에서 가이드라인 형태로 27만원을 정한 이후에 4년여 동안 운영해 오면서 27만원의 적정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시 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연 27만원이 적정한지 상향시켜야 하는지 그것보다 낮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쪽 검토해 보니까 우선 정확하게 어느 금액이 적정한 규모인가를 알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까 이용자정책국장께서 이통사들의 평균 예상이익과 제조업체들의 장려금 평균 규모를 이야기했지만 이통사들의 평균 예상이익도 회사마다 차이가 많고, 또 그것이 해마다 다르고, 그것보다 더 변수가 많은 것이 제조업체들의 장려금 규모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정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이 우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향을 시켜야 하는 그 요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고사양화되고 계속 버전업되고 그런 측면은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과거에 출고가 내지는 공급가의 부풀리기, 그것이 이통사들이 책정을 했던 제조사들이 책정을 했던, 그 부풀리기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출고가, 공급가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일단 알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보조금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서 일부 언론에 수시로 보도되는 금액을 보면 예를 들면 60만원이다, 80만원이다, 심지어는 100만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금액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풀리기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가의 요금제를 약정기간 동안 선택함에 따라 그것을 할인해 주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 감안이 돼서 일부 소비자나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큰 의미의 '보조금' 하면서 하는 그 금액의 규모가 무척 크게 이야기가 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적정한 지원금 상한액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정들을 쪽 보면 이것이 27만원이 적정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큰 폭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통위에서 그동안에 단말기 불법보조금에 대한 조사도 수차례 해 왔고, 또 공정위에서도 이통사, 제조사를 상대로 조사도 해 봤지만 그 자료도 보면 거기에서 지적하는 소위 말하는 보조금의 규모는 진폭이 매우 커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 드립니다만 생각보다 단말기 가격이나 우리가 쉽게 인구에 회자되는 보조금 규모가 생각보다 많이 부풀려져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러한 인식하에서 적정한 상한규모를 생각해 봤는데 아직까지도 어느 규모가 적정한 규모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 방통위가 이통사로부터, 제조사로부터 출고가, 판매액 내지는 지원금 규모, 장려금 규모를 정기적으로 자료를 제출받게 되고, 또 저희가 지금은 인력이 태부족이긴 합니다만 조사인력 증원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더 정확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게 될 수 있

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사도 두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사무처에서도 여러번 검토도 했고 위원님들도 수차례 논의를 했습니다만 25만원~35만원 그 범위 내라면 공식적인 행정예고를 통해서 이통사든 제조사든 소비자든 또 관계부처든 의견을 들을 정도의 안은 된다고 해서 저는 이 안에 동의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통시장 자체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정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방통위가 융통성,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상한액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저희가 결국 최종 결정하면 되는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안으로 되어 있는 6개월마다 이것을 조정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단축해서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나 시장 동향들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처럼 방통위가 앞으로 각 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는 그런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고, 또 시장 변화하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융통성 있고 탄력성 있고, 또 적시에 이런 것을 가감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시 말씀 드린 것처럼 이 상한액에 관한 초안이지요. 이것이 협의하기 위한, 의견수렴하기 위한 초안으로서 이 내용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우리 사회에 단말기 보조금 문제로 해서 이용자 차별의 현상이 아주 심각했던 그 문제가 조금은 진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 볼 때 이 법에 따라서 이통사들의 단말기 장치와 또 출고가, 지원금, 실제 판매가, 이것을 앞으로 공시하게 되면 그동안의 판매현황과 어떤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제가 정확하게 예측해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시행 예정인 단말기유통법은 과거에 저희가 해 보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특수한 특별한 제도들이 많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불법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많이 줄어들고 굉장히 시장이 안정화 되리라고 믿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동안 어떤 특정한 짧은 기간을 정해서 27만원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지어놓은 그것도 무시하고 몇 십만원, 100만원 가까이도 이렇게 공짜폰을 주는 현상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다고 기대합니까, 어떻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완전히'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진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리고 최근 언론의 보도를 보면 몇 가지 공급증을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소위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보조금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이 어떠한 의견들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실무적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제조사 장려금을 구분해서 공시토록 하는 것은 단말기 공급가 인하를 유도한다든지, 또는 장려금이나 지원금의 제조사와 이통사 구분을 투명하게 공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현재 법에서 제조사가 제출하는 장려금에 관한 자료제출 관련된 법 규정을 비추어 보면 법적으로 구분 공시의 의무를 주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 저희가 기간을 두고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먼저 행정예고하고 사무국에서 법적 검토도 추가로 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에서 다시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지금 제정한 이 법에 따르면 그것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것은 강제화 되어 있지 않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어쨌든 지금 시행령 내용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27만원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이 정말 보조금 가이드라인으로서 적정한 수치냐 하는 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의 관행을 기준으로 해서 하한선과 상한선을 설정하고, 또 이것이 시행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6개월 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또 즉시로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은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설정한 데 대해서 걱정하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항목별로 논의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시문제로 넘어가서...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다음에, 고삼석 위원님 일단 제1항에 대해서만 먼저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이 안건을 심의하는 제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 드렸고, 이제 지원금 상한액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27만원 상한이라는 것이 과거 피쳐폰(feature phone) 이용환경을 전제로 해서 설정됐던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통사와 제조사들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단말기 가격 역시 현재 스마트폰은 평균 1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정 정도 상향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기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통신요금이나 단말기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지금 이통사들이나 제조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비해 많지 않다, 즉 정보의 제약 속에서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정 정도 상한액의 범위를 정해 놓고 구체적인 상한액을 추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분리공시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논의하시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고 위원님 말씀 중에 결정을 했다는데 오늘 저희가 이 고시 내용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 협의를 하기 위한 안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 의미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잘 아시다시피 오늘 고시안은 앞으로 행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다시 위원회에서 9월경에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되는 사안임은 명확합니다. 일부에서는 고시에서 상한액의 범위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상한액을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 단위로 또는 긴급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해서 결정하는 것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예에 비추어 볼 때 보조금이 27만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이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이동통신단말기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들을 신설하고, 또는 확장해서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금의 상한액도 그와 같은 이동통신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거기에 대한 일정한 통제 또는 일정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인 상한액을 방통위가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1>번 상한액 기준 및 한도에 관해서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로 하고, 구체적인 상한액은 방통위가 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네 분 다 의의가 없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번 지원금 공시 및 계시방법과 관련해서 현재 안에는 지원금을 구분 없이 공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부에서는 이 지원금을 제조사의 장려금과 그다음에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구분해서 공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제가 10시에 정부 행사 참석 관계로 먼저 이석해야 할 것 같아서 먼저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지원금의 공시와 관련해서 이통사, 제조사의 지원금을 분리해서 공시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야 하느냐 하는 이 이슈는 사무처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위원님들 간에는 충분히 논의가 안 된 이슈인 것 같은데 이 며칠 사이에 그런 이야기들이 일부 제기가 되어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거기에 대한 검토가 충분치 못해서 여기에서 분리공시가 맞다, 분리공시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사무처에서도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못해서 일단 오늘 보고안건에는 분리공시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 드린 것처럼 행정예고 기간이 사실상 공식적이고도 본격적인 의견협의 내지는 수렴기간이라고 생각해서 분리공시 여부 문제도 이때 본격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논의를 하시겠지만 제가 사무처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분리공시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해관계자가 있다면 거꾸로 분리공시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것을 듣는 방법도 있지만 반대로 분리공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분리공시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지, 그리고 분리공시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에게는 분리공시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단말기유통법에는 분리공시 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정은 안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통사, 제조사의 지원금을 분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 하위법령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 할 때는 모범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그 취지를 살려서 폭넓게 하위법령에 담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굉장히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하위법령을 입법하는 방법 등 크게 두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가지가 모범의 전체 내용을 보고 그것이 법률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그런 내용을 담는 것이 고시에서 가능한지, 안한지 이런 법률 체계상의 검토, 이렇게 크게 두가지 검토를 심층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나 다른 관계부처나 소비자 의견만 듣지 말고 바로 행정예고하면서 사무처에서도 이제부터라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사무처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고시안에 들어 있지 않지만 고시안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이 분리공시를 안 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분리공시에 관한 문제가 뒤늦게 제기가 됐고, 그것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그 내용을 고시안에 안 담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향후 각계의 의견수렴, 또 저희 내부 논의 등을 통해 분리공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자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공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비자, 이용자와 시장 중심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의 주체 중의 하나인 기업들 사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사의 경우에는 분리공시가 이루어져서 소비자가 받는 보조금 중에 제조사의 장려금이 얼마이고, 이통사의 지원금이 얼마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공개할 경우에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별 흥정과 개별 협상, 일종의 영업비밀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관계에서도, 한국에서는 제조사들이 장려금을 얼마 주는데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주느냐고 항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조사의 입장도 고려요인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건대 소비자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제조사의 장려금으로 얼마를 받는 것인지, 이통사의 지원금으로 얼마를 받는 것인지를 잘 몰라서 불만을 제기하고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현장에서 제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비자의 소비행동은 한 3가지 패턴인 것 같습니다. 번호이동과 단말기 구입을 두고 2개를 다 하는 경우와 번호이동만 하는 경우와 단말기만 교체, 구입하는 경우 이 3가지 형태인데 2가지를 다 해야 제조사와 이통사로부터 오는 장려금과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소비자는 번호이동만 하고 단말기는 교체, 구입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보조금을 덜 받았다고 나중에 알고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역시 소비자, 이용자들이 투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릴 의무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공시도 기본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소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시 3개의 소비행태 중에서 나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선택, 결정할 수 있는 데에도 도움이 되도록 제조사의 장려금은 얼마이고, 이통사의 지원금은 얼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제조사의 기업활동도 고려요인이 되기 때문에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정책은 역시 국민, 소비자들 중심으로 펴야 하기 때문에 분리공시하는 것이, 제조사와 이통사의 장려금과 지원금 내용을 투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한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앞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 여쭙 보겠습니다. 저희가 분리공시 제도를 도입하든 도입하지 않든 최종적으로 제조사가 지원하게 되는 지원금 규모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제조사가 대리점으로 주는 장려금과 이통사로 주는 장려금 2가지로 되어 있는데 대리점으로 직접 주는 장려금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통사를 통해서 주는 장려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조사별로는 자료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다면 결국 제도 도입이 되면 단말기를, 예를 들어 구입해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할 경우에는 최소한 보조금 규모 전체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조사가 주는 것, 그다음에 이통사가 주는 것...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합쳐서, 합친 경우...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다음에 요금할인으로 갈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요금할인만 선택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이통사가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미래부가 이통사가 주는 부분만큼 할인해 주는 형태로 고시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결과적으로 이통사도 알고, 제조사도 알고, 소비자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규제당국으로서 방통위원회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말기유통법 입법취지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단말기의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있고, 그다음에 이를 통한 이용자 차별 해소가 있고, 지원금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도모하자, 유도하자는 입법취지의 정책목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복잡한 과정을 거쳐 알게 하는 것보다는 분리공시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나중에 행정예고 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 여기에는 장려금으로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각각 절반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공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용자의 편의성입니다. 이용자들이 쉽게 제조사에서 얼마, 이통사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용자 입장에서 요금할인 선택요금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본인이 예를 들어 이통사에서 받는 것이 얼마인지, 그리고 적당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쉽게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쉽게 이용자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래부 입장은 분리

공시하자는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어떤 형태로 받았습니까? 공문입니까, 아니면 의견 형태로 받았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실무자가 이메일로 받았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미래부에서 적극적으로 분리공시하자는 입장을 전달해 온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희와 미래부의 입장도 있고 정책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장에서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이 문제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태를 그대로 지속시키는 것보다는 우리가 고시를 마련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책적 입장을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 말씀의 상당 부분이 분리공시를 하는 것이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고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또 그 근거들이 일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분리공시에 대해서 찬성·반대의 입장을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만 향후 논의의 자료로써 분리공시의 부적절한 면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논의된 의견을 말씀 드리는 것이지, 제가 분리공시의 찬반에 대해 확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보조금, 여기에서는 ‘지원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원금의 지급주체는 이동통신사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경위로 조성된 것인지 공시에 대한 내용이 법에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고시가 법에 위임을 받아서 제정되어야 하는데 혹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조사의 경우에는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이 제조사별로 장려금 규모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사 모두

합쳐서 전체 장려금 규모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입법취지는 각 제조사별로 각 이동통신사에게 지급하는 개별적인 장려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도록 한 것이 입법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할 사항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향후 저희가 공시한 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현재는 그 재원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책임을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담을 했지만 새로 제정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는 그 책임이 이동통신사뿐만이 아니고 제조사에게도 제재를 가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 실제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마련한 재원을 합한 금액이 지급되는데, 과연 그것이 어느 쪽에서 더 과다한지, 지원금을 지급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그런 경우에 누구를 제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점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바로 분리공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들이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그냥 요금할인만 받을 경우에 당연히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범위 내에서 요금할인을 받을 것으로 고시가 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의 여러 가지 충돌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고시안에는 그 내용을 넣지 않고, 그다음에 행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또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포함해서 수렴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느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다 같은 의견이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분명히 하기 위해 하나만 여쭙 보겠습니다.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지원금 상한을 결정하여 관보 등을 통해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관보 등을 통해 공고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나머지 <3>번 긴급중지 명령, 과징금, 금지행위 업무처리 규정,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등에 관해서 다 묶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 <5>, <6>번을 다 포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 특별한 의견 없으

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보고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원안대로 접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접수하겠습니다.

#### **다.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사항**

#####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다>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헌 행정법무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헌 행정법무담당관**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개정 이유입니다.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MBC)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이사 등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대통령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추가되어 자문·고문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시행령을 제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방송법은 5월 28일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6월 3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위원회 보고 후 7월 중에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고, 8월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법에서 대통령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을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현재 이와 같은 시행령 제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선거캠프라고 해야 하나요, 선거 과정에서 그 선거에서 자문·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의 조직, 명칭, 그다음에 그 안에서 부과된 임무 등이 워낙 다양하고 각양각색이어서 이것을 몇몇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나름대로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지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포섭이 되도록 안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더 나은 표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 허원제 부위원장**

- 조금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서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조직이라는 것이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와 대등한 위치입니까, 아니면 이 세 기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 이 헌 행정법무담당관

- 후자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에 준하는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러면 선거사무소, 연락소, 선거대책기구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 이 헌 행정법무담당관

-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거운동, 자문·고문들이 주로 각종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외에 명칭이 캠프, 포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나열이 다 불가하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왜냐하면 선거대책기구라고 통상 보면 선거대책본부, 선거대책위원회 명칭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방금 이야기한 외곽 캠프라 하면 가령 그 외곽 캠프라는 것이 선거대책기구 속에 포함이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이 헌 행정법무담당관

- 그래서 현재 공직선거법 제81조에 따라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이외의 공식적인 기구들은 다 불법조직이고, 이 선거대책기구에서 실제 선거를 위해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선거대책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실질 조직들을 다 반영하기 위해 이에 준하는 조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정말로 나타나지 않은 비공식적인 조직까지는 사실상 저희가 규율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예고 기간에 추가적으로 의견이나 합리적인 방안,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선거와 관련해서 활동했던 분들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개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비공개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된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격요건을 갖고 있다, 이것을 확인할 예정입니까?

○ 이 헌 행정법무담당관

- 입증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결격사유 중 하나가 당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의 경우에 본인의 결격사유 확인서에 저희가 실제 서명을 받아서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실제로 활동하고도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 정당에 직접 확인이 쉽지 않아서 일단 저희도 결격사유 확인

서를 받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각종 서류들, 가령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건이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논의결과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고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이지요?

○ 이 헌 행정법무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에서 관련된 논의를 주도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는 것이 추후에 논란의 소지를 없앨 것 같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충분히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헌 행정법무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증명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실제 이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미리 사장, 이사의 임명 전에 어떤 서류로서, 또는 어디에 사실 조회를 해서 확인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면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런 규정을 됴므로 인해 설사 완전히 이런 것이 체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으로부터 그런 확인서를 받고, 그다음 나중에 사장이나 이사로 임명이 되거나 또는 된다는 보도가 있을 때 아마도 여기에 해당하는 분은 주위에서 이렇게이렇게 활동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과정을 통해 걸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접수하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주)씨씨에스 충북방송 등 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지급 관련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4-27-089)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주)씨씨에스 충북방송 등 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지급 관련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주)씨씨에스 충북방송 등 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지급 관련 시정조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씨씨에스 충북방송 등 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지급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7개 사업자는 (주)씨씨에스 충북방송, (주)강원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 영서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 전북방송, (주)충청방송, (주)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주)티브로드 한빛방송이 되겠습니다. 주요경과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피심인의 일반현황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지급 행위입니다. (주)씨씨에스 충북방송은 '12년, '13년도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따라 매 익월말까지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12년도 137개 PP에게 지급해야 할 프로그램 사용료 33억 8,000여 만원 중 1,000만원 정도만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3억 7,000여 만원 중 7억 4,000여 만원은 '12년 6월~'13년 5월에 걸쳐 분할지연지급하고 26억 3,000여 만원은 '13년 6월에서야 일괄지급함으로써 평균 지연지급기간이 311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13년도는 132개 PP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료 34억 6,500여 만원 중 175만원만 정상지급하고 나머지 34억 6,000여 만원 중 4억 8,400만원은 '13년 5월~'14년 6월에 걸쳐 분할지연지급하고, 나머지 29억 7,800여 만원은 6월 30일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씨제이헬로비전 영서방송은 '12년도에 136개 PP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료 34여 억원 중 2억원만 정상지급하고 나머지 32억원을 '12년 11월~'13년 6월에 걸쳐 분할지연지급함으로써 평균 지연지급기간이 331일로 나타났습니다. '13년도에는 프로그램 사용료 35억 4,200여 만원 중 15억원 정도만 정상지급하고, 134개 PP에 대해 20여억원을 '13년 7월~'13년 10월에 걸쳐 분할지연지급함으로써 평균 지연지급기간이 118일로 나타났습니다. (주)강원방송은 '12년도에 131개 PP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료 24억 3,900여 만원 중 2,000여만원만 정상지급하고 나머지 24억 1,100여 만원은 '12년 6월~'14년 2월에 걸쳐 분할지연지급함으로써 평균 지연지급기간이 135일로 나타났습니다. '13년도에는 128개 PP에 대한 사용료 26억 9,100여 만원 중 1,400여 만원만 정상지급하고, 나머지 26억 7,700여 만원을 '13년 4월~'14년 3월에 걸쳐 역시 분할지급함으로써 평균 지연지급기간이 172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씨제이헬로비전 전북방송은 '13년도에 132개 PP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료가 23억 4,800여 만원 중 6억원만 정상지급하고 나머지 17억 4,000여 만원을 '12년도 3월~'13년 2월에 걸쳐 분할지연지급함으로써 결국 평균 지연지급기간이 141일로 나타났습니다. '13년도에는 25억 1,500여 만원 중 11억 9,700만원을 정상지급하고 13억 1,800여 만원을 '13년 4월~'14년 1월에 걸쳐 역시 분할지연지급함으로써 평균 지연지급기간이 120일로 나타났습니다. (주)충청방송은 '12년도에 114개 PP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료 25억 4,400여 만원 중 2억 1,200여 만원만 정상지급하고, 나머지 23억 3,100여 만원을 지급기간보다도 1개월씩 늦게 지급함으로써 평균 지연지급기간이 29일로 나타났습니다. '13년도 120개 PP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료 26억 5,800만원 중 8억 6,400만원만 정상지급하고, 나머지 17억 9,400만원을 '13년 7월~'14년 2월에 걸쳐 분할지연지급함으로써 평균 지연지급기간이 148일로 나타났습니다. (주)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은 '12년도 136개 PP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료 11억 8,800만원 중 1억 8,500만원만 정상지급하고, 107개 PP에 대해 10억원 중 8억 3,100여 만원은 1개월씩 늦게 지급하고, 1억 7,100여 만원은 '13년 1월에서야 일괄지급함으로써 평균 지연지급기간이 89일로 나타났습니다. '13년도에는 138개 PP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료 16억 3,000여만원 중 7억 7,300여 만원만 정상지급하고, 130개 PP에 대한 사용료 8억 5,600만원은 금년 1월에서야 일괄지급했습니다. 따라서 평균 지연지급기간이 176일로 나타났습니다. (주)티브로드 한빛방송은 '12년도에 135개 PP에게 지급해야 할 프로그램 사용료 20억 7,000만원 중 20억 4,000만원은 정상지급했고, 43개 PP에 대한 사용료 2,000여 만원은 '13년 1월에서야 일괄지급함으로써 평균 지연지급기간이 178일로 나타났습니다. '13년도에는 137개 PP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료 29억 5,900여 만원 중에서 13억 6,500만원은 정상지급했고, 130개 PP에 대한 사용료 15억 9,400만원을 금년 1월에 일괄 지급함으로써 평균 지연지급기간이 176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충북방송은 '12년, '13년도 프로그램 사용료 68억 4,700만원 중 38억 5,600만원은 지연지급하고, 29억 7,800만원은 6월 30일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서방송 등 6개 SO는 전체 프로그램 사용료 299억원 중 약 209억원을 지연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부분입니다. 7개 SO 모두 '12년, '13년도 프로그램 사용료 총 278억원을 지연지급했습니다만 이에 따른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SO와 PP 간의 프로그램 공급계약서라든가 방송법령에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이나 상법에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이자 청구권 및 법정이자율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SO가 PP에 지급해야 할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지급액과 지연지급기간을 고려해서 상법상에 규정된 이자율 6%를 적용해 보면 예상 지연이자가 SO별로 적게는 2,900만원에서 많게는 3억 2,400만원까지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지급 행위 건입니다. (주)씨씨에스 충북방송이 PP로부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방송수신료를 받으면서도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따라 당연히 지불해야 할 프로그램 사용료를 PP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행위는 '적정한 수익배분을 위한 계약 및 체결된 수익배분 계약의 이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5제1항 [별표2의2] II-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씨제이헬로비전 영서방송, (주)강원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 전북방송, (주)충청방송, (주)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및 (주)티브로드 한빛방송 등 6개 SO 역시 프로그램 사용료를 PP에게 지연하여 지급함으로써 동법 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해서는 7개 SO가 278억원을 지연하여 지급했는데 이에 따른 지연이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살펴 보면 당사자간 「프로그램 공급계약서」에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 법률상에도 금지행위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행위가 향후 재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PP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한 조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시정조치(안)에 대한 피심인 의견입니다. 대체적으로 피심인들은 설비 투자 및 경영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에 따른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기한 내 미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는 이미 지급했다, 그리고 앞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점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처분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습니다. 시정조치(안)입니다. (주)씨씨에스 충북방송 등 7개 SO가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 및 동

법 시행령 제63조의5제1항 [별표2의2] II-1호를 위반한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및 지연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동법 제8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 절차개선, 이행계획 및 결과 보고,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먼저 오늘 관계자가 의견진술을 하겠다고 한 것이 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7개 사업자 중에 충북방송 측에서 나와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다고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우선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기 전에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연이자 지급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방송법에는 없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늘 올라온 7개 SO 중에 6개가 MSO입니다. 티브로드, 씨제이, 씨엠비...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사실상 케이블업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요 MSO인데 이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즉, 위원회가 법적으로나 아니면 위원회가 행정지도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 지금까지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지연해서 지급해 왔던 것 같은데 차제에 방통위가 조사함으로써 그런 관행들이 앞으로는 바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MSO를 비롯한 SO 측에서도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까?
- 김성규 방송시장조사과장
  - 하겠다는 의사는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조금 이따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현재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에는 PP에게 SO가 프로그램 사용료를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을 보통 규정하고 있습니까?
- 김성규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통상적으로 보면 그다음 달 말까지 준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 달 말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PP로부터 프로그램 공급받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 김성규 방송시장조사과장
  - 익월 말일까지 정도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 김성규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과거에 또는 과거가 아니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실무관행상 긴 기간은 아니지만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이 안 되고 그 기간을 짧게라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그렇겠지요?
- 김성규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관행으로 파악되니까?

○ **김성규 방송시장조사과장**

- 지금 이 조사를 한 것이 '12년도 이후에 최초 조사가 되겠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도 아마 그러한 관행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연이자 부분은 아마 지급을 안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과거에도 실무상 지연이자는 지급을 안 해 오고 있었을 것 같다?

○ **김성규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시정명령을 통해 앞으로는 프로그램 공급계약서에 반드시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조항을 넣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현황이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물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7개 SO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그렇게 하겠지만 나머지 다른 SO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형식으로라도 모두 프로그램 공급계약서에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야 형평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니까 프로그램 제작사 PP와 그것을 방송해 주는 SO 간의 문제입니다. 방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도 양자가 서로 계약에 의해 원만하게 해 나가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방송법에 근거해서 프로그램 공급계약서가 있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

서 PP 쪽에서 방통위에 문제제기가 있었습니까?

○ 김성규 방송시장조사과장

- 저희가 작년 10월 정도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면으로 방송시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유형이 어떠한고 실질적으로 피해사례를 입었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PP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들이, SO에서 프로그램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추측컨대 대체로 아시겠지만 SO와 PP의 관계는 SO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강자의 위치에 있는 것인데, 프로그램 사용료를 제때 주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갑을관계도 많은 이슈화가 되어 왔는데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SO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서 양쪽의 균형 있는 발전, 앞으로 원만한 관계를 위해 시정조치도 필요하고 질서체계를 바로 잡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주)씨씨에스 충북방송 측의 의견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와 계시면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주)씨씨에스 충북방송 의견진술인 입장)

가운데 자리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씨씨에스 충북방송의 유인무 대표이사이십니까?

○ 유인무 (주)씨씨에스 충북방송 대표이사

- 예.

○ 최성준 위원장

- 앉으시지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과 지급지연에 대한 (주)씨씨에스 충북방송 측의 입장을 말씀하시고자 나오신 것이지요?

○ 유인무 (주)씨씨에스 충북방송 대표이사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유인무 ㈜씨씨에스 충북방송 대표이사

- 먼저 방송발전에 있어서 PP콘텐츠 사용료의 지급에 대해서 의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고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계유선방송부터 케이블TV 변천사, 현재까지 제가 몸담고 있었던 것이 현장의 업무부터 시작해서 한 30년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요즘에 있어서 나름대로 법과 주변 사업자에 대해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나름대로 현재 단일SO, 특히 도농복합지역에 있는 SO의 현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PP수신료 부분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씨씨에스 충북방송이 PP료 지급을 지연하게 된 과정은 과거 중계유선방송과 SO의 통합 과정 중에서 ㈜씨씨에스 충북방송은 18개사의 RO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과금통합이 되지 않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방송 지역만 18개 단일RO 사업자가 있었는데 그분들과 분쟁을 통해 하는 것보다도 뭔가 협의를 통해 하려고 제가 5년, 6년을 끌어와서 협의해 와서 금년도에는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되는 과정 중에서 RO사업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매입을 해 주어야 하고, 또 분쟁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로 투자망을 해 주어야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불가피하게 현장의 디지털 투자와 RO 농촌지역의 선로망 투자비용이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바람에 우리의 동종업계인 PP에 대해 수신료 지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현재 SO의 수입 가지고서 PP료를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 사업 환경상, 주변 환경상 현재 안 되기 때문에 대주주 개인이 자본을 증자해서라도 금년 안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입니까?

○ 유인무 ㈜씨씨에스 충북방송 대표이사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진술인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아까 말씀하셨듯이 30여년 유료방송 쪽에 종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 유인무 ㈜씨씨에스 충북방송 대표이사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케이블방송 중심으로 보면 유료방송의 두 축이 됩니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두 축이요. 그 2개 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인무 ㈜씨씨에스 충북방송 대표이사

- SO와 PP라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SO가 없으면 PP가 프로그램을 송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PP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SO가 이용자들에게 보내줄 콘텐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 유인무 ㈜씨씨에스 충북방송 대표이사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도 투자여건, 경영환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PP에 대해 지금해야 할 수신료는 사장님께서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PP없이 케이블방송이 존속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유인무 ㈜씨씨에스 충북방송 대표이사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법적으로 보면 방송수신료의 대략 25%를 PP의 몫으로 주게 되어 있지요?
- 유인무 ㈜씨씨에스 충북방송 대표이사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왜 그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데 투자하는 것이지요?
- 유인무 ㈜씨씨에스 충북방송 대표이사
  - 제가 PP료를 작년도 부분에 대해 몇몇 PP사들과 사적인 협의는 거쳤지만 그전에 RO사업자들이 과금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PP료를 지급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방송법상 문제가 되고 소비자들에 대한 과금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먼저 SO와 PP 발전을 위해 선투자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공격적으로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과도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작년도 매출이 216억원이지 않습니까?
- 유인무 ㈜씨씨에스 충북방송 대표이사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여기에서 수신료 수입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 유인무 ㈜씨씨에스 충북방송 대표이사
  - 수신료 수입이...
- 고삼석 상임위원
  - 몇 퍼센트가 됩니까?
- 유인무 ㈜씨씨에스 충북방송 대표이사
  - 한 80% 차지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예를 들어 수신자들이 충북방송에 대해 수신료를 내지 않았다면 이 기업이 존속할 수 있습니까?
- 유인무 ㈜씨씨에스 충북방송 대표이사
  - 제가 실무적으로 경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월 매출이 18억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금 되는 금액은 17억원이고 그리고 도농복합지역이라서 현장의 유지·보수하고 디지털 투자하고 운영하는데 19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거의 평균적으로 한 달에 SO 수입만 봤을 때, 실질적으로 매달 봤을 때는 한 달에 2억원씩 현금성으로 안 맞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사장님, 제가 경영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용자들이 수신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충북방송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유인무 ㈜씨씨에스 충북방송 대표이사
  - 운영 안 되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PP들은 어디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급합니까?
- 유인무 ㈜씨씨에스 충북방송 대표이사
  - 저희...
- 고삼석 상임위원
  - SO지요?
- 유인무 ㈜씨씨에스 충북방송 대표이사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여기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PP들은 어떻게 운영해야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충북방송의 이용자들이 매월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운영되지 않는 것처럼 PP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개 SO들 가운데 1개라고 하시겠지요. 그러나 그 1개, 1개들이 이렇게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PP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수신료를 받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공급하는 데 차질이 있다면 케이블방송 전체가 부실해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2012년 건은 늦게라도 다 지급을 하셨으니까 2013년도 분을 보면 현재 미지급된 금액이 29억 7,800여 만원 정도 되지요?

○ 유인무 ㈜씨씨에스 충북방송 대표이사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것을 늦어도 올해 연말 내에는 다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 유인무 ㈜씨씨에스 충북방송 대표이사

- 지금 저희들이 회사의 자본 건실성을 위해서는 대주주의 자본 증자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자본증자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 오늘까지도 자본증자를 위한 회계 실사팀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 자리에서 며칠 안에 드리겠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한 3~4개월 안에는, 최소한 증자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70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3~4개월 안에는 나름대로 증자에 대한 방안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의견진술인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유인무 ㈜씨씨에스 충북방송 대표이사

- 감사합니다.

(㈜씨씨에스 충북방송 의견진술인 퇴장)

○ 최성준 위원장

- 안건 보고와 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조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종기 국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본 건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에 대해서 방송정책국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방송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방안입니다. 첫째, 아직까지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주)씨씨에스 충북방송에 대해서는 방송법령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령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14년도 프로그램 공급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미 '14년도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SO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조항의 변경을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시정명령 받은 내용을 PP에게 우편으로 개별 고지하고, 자체 지역채널을 통해서 3회 이상 방송으로 고지하며, 각사의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넷째,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향후 미지급·지연지급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업무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입니다. 끝으로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토록 조치하는 방안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부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건은 현재까지도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SO가 이미 있고, 이미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였더라도 방송법령 위반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프로그램 사용료가 PP의 주된 재원이라는 점, 건전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과거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필수적 조정과 추가적 조정을 거쳐 관련서비스 매출액의 2%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방안입니다. 본 건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과거 과징금 부과사례 등을 고려할 때 부과기준율은 중대성 약함이 적정할 것으로 봅니다. 각 사업자 부과기준율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씨씨에스 충북방송은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연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13년도 프로그램 사용료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0.4% 적용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총 계약금액', '지연지급 금액'과 '지연지급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반의 정도가 이번 조사대상 7개 SO의 평균이 2.13% 정도 됩니다. 그 점수를 상회하는 2개 사업자, 즉 (주)씨제이헬로비전 영서방송과 (주)강원방송에 대해서는 부과율을 0.2%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 드립니다. 그 외에 (주)씨제이헬로비전 전북방송, (주)충청방송, (주)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과 (주)티브로드 한빛방송은 0.1%를 각각 차등하여 부과하는 방안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필수적 조정입니다. 위반행위 기간과 횟수에 따라 필수적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씨씨에스 충북방송과 (주)강원방송의 경우 위반기간이 '2년 초과'하였으므로 50%를 가중하고, 나머지 5개 SO는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이기 때문에 30%를 필수적으로 가중해야 합니다. 다음은 추가적 조정입니다. (주)씨씨에스 충북방송의 경우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0% 가중하는 반면에 조사협력으로 20%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추가적 조정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씨제이헬로비전 영서방송은 조사협력으로 해서 20%를 감경하고, 조사 이전 자진시정으로 해서 30% 감경해 줄 경우 총 50% 감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원방송, 전북방송, 도봉강북방송, 한빛방송은 조사협력으로 20% 감경, 조사 이후 자진 시정으로 20% 감경을 받아서 총 40% 감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과징금을 말씀 드리면 (주)씨씨에스 충북방송 1억 1,207만원, (주)씨

제이헬로비전 영서방송 2,317만원, (주)강원방송 2,709만원, (주)씨제이헬로비전 전북방송 982만원, (주)충청방송 1,342만원, (주)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523만원, (주)티브로드 한빛방송 963만원으로 전체 총액으로는 2억 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방송정책국의 시정조치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논의의 효율을 위해서 시정명령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과징금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명령에 대해서 <1>~<5>까지 있는데 이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급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연이자의 규정을 두기는 두되 지연이자를 아주 미미한 금액으로 해서 사실상 지연이자 규정을 두나마나하게 그렇게 할 우려는 없습니까? 지연이자가 아까 보고 당시 말씀하신 것처럼 상법 또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정도는 현재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즉 금리가 많이 내려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좀 과도하다고 보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은행금리 정도의 비율은 되어야 PP들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전보되고 그다음에 SO에게도 제 날에 지급해야겠다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이 지금 건의 드리는 시정명령(안)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SO와 PP와 협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 협의과정에 양측 의견을 들어서 적정하게 표현이 들어가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업체 행정지도할 때도 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명령에 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징금 부과 적정성, 지금 사무처에서 제시한 것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0.4%에서 0.1%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2013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 (2014-27-090)**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2013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013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방송법 제35조의4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심의한 「2013년도 매체교환율」과 「2013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은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시청점유율입니다. 시청점유율은 방송법 제69조의2와 산정기준에 따라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와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을 경영할 경우 일간신문의 구독률에 일정비율, 즉 매체교환율을 적용하여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후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영비율입니다.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은 100% 반영하여 합산하고,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지분을 소유할 경우 소유비율 만큼 곱하여 합산합니다.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을 경영할 경우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100% 반영하고,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지분을 소유할 경우 소유비율 만큼 곱하여 합산합니다. 2013년도 매체교환율입니다.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 간 매체 영향력의 차이로서 텔레비전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비율을 의미합니다. '13년도 매체교환율은 산정기준에 따라 이용자 조사와 시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책정한 값은 0.40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입니다. 환산대상은 방송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사업을 경영하거나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26개 일간신문이 되겠습니다. 환산방법은 일간신문의 구독률에 매체교환율(0.40)을 곱하여 환산된 시청률을 구한 후, 이를 2013년도 전체 텔레비전 방송 시청률의 합(32.970)으로 나누어 환산 시청점유율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 드리면 조선일보 계열은 6.860%, 중앙일보 계열은 4.653%, 동아일보 계열은 3.282%, 매일경제는 1.28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시청점유율 산정결과입니다. 산정대상은 텔레비전 방송을 운영하는 225개 방송사업자의 373개 채널과 방송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26개 일간신문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간은 작년도 1월 1일~작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상파방송의 시청점유율을 말씀 드리면 KBS가 31.989%, MBC 16.778%, SBS 9.673%, EBS 2.424% 및 KNN 1.39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SO 계열의 시청점유율을 말씀 드리면 씨제이이엔엠이 8.881%, 티캐스트 2.900%, 씨유미디어 2.206%, 현대미디어 0.887% 및 씨엠비홀딩스가 0.3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종합편성·보도PP의 시청점유율은 조선방송 9.026%, 제이티비씨 7.810%, 채널에이 5.350%, 매일방송 3.825%, 와이티엔 1.611% 및 연합뉴스티브이 0.95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법령 위반 여부입니다. 작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볼 때 방송법 제69조의2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한 방송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산정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방송사업자의 허가·재승인 시 산정결과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 고삼석 상임위원

- 시청점유율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10년도 그 당시의 주요 일간지들이 방송사업에 참여하자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종합편성·보도PP가 도입되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특정 언론, 즉 방송이 됐든 신문이 됐든 국내 방송시장을 독과점하는 형태를 방지하기 위해 저희들이 그 규정을 두었던 것이고 그 취지에 따라 시청점유율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결과를 보면 '11년, '12년, '13년도에 실시를 했고, 지금 방송법에서 제69조2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한 사업자가 없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위원회가 취한 조치가 전혀 없겠습니까? 그렇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위반사업자라고 해서 조치한 결과는 없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보시기에 정책목표가 달성되어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이 봤을 경우 그 당시, 물론 이 정책을 도입한 목적과 배경이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당분간은 이 30%를 초과한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회에서 2012년에 정책과제로 미디어다양성지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을 보면 주로 전문가들 대상으로 텔파이기법으로 해서 조사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최근의 미디어 이용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즉 온라인 및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 그다음에 매체교환율이 현실적으로 적합하나, 적시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그다음에 주요하게 지적되는 것이 시사정보 장르, 이 개념이 명확해야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전체 장르를 다 포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의 입법취지나 정책의 목표 이런 것들과 그렇게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사 장르로 국한해서 한다면 이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문도 현재로서는 구독자 수 기준, 구독률 기준으로 하지만 열독률로 반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2012년 정책과제 결과에 보면 정책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작년도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논의하거나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에 관한 시청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스마트 미디어 시청점유율 조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봐서도 다른 나라도 그런 사례가 없고, 최근에 그것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금년부터 기초적인 단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장르별로 세분화해서 시청률을 조사하는 문제나 신문의 열독률 조사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신문·방송 겸영제도가 도입된 뒤에 이 조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신문의 매체교환율이 매우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그다음에 시장조사, 이것은 광고매출액입니다. 이 중에서 이용자 조사보다 시장조사 즉 광고매출액의 비중이 많이 높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용자조사 0.36이었고, 시장조사는 0.43으로 해서 평균을 내서 0.40으로 매출교환율을 냈는데, 이용자라는 것이 독자 구독률 아니겠습니까? 광고매출액보다 이용자 쪽이 더 높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학계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까?

○ 김재철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이용자조사는 3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사정보 이용률과 두 번째 시사정보 이용시간, 세 번째 매체의존도라고 하는 3가지 질문을 가지고 2,000여명의 표본을 통해 TV를 1로 했을 때 상대적인 신문에 대한 의존도를 묻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간신문의 구독률이 떨어지면서 일간신문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대신에 광고는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작년 1년 동안 텔레비전 광고의 광고비와 일간신문의 광고비를 비교해서 그것을 상대적인 비율로 하기 때문에 광고비에 의존하는 시장 조사가 매체이용 행태를 묻는 것보다는 약간 높게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신문 인쇄매체의 영향력을 TV에 비해 40%로 봤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계 전문가 그룹들과 어느 정도 합의해야 하는데, 그런 정도 근거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예를 들면 조선일보의 경우 TV조선이 있고 조선일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지수 합한

것은 9.026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높아서 영향력이 더 강하다거나 또는 낮아서 규제 상한선의 밑에 있기 때문에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신문의 영향력을 너무 방송 중심으로, TV 중심으로 교환하면서 실제 영향력이 맞지 않게 나온 것 아니냐, 다른 중앙일보 계열도 마찬가지이고 동아일보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지적이나 비판은 없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틀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방송이나 조사 리서치, 법률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최근에 구성을 새로 했습니다만 과거부터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틀들을 계속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거기에서 토론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KBS의 시청점유율이 31.989%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그룹이 신문·방송 겸영 합해서 매체교환율로 했을 때 6.860이다...

○ 최성준 위원장

- 6.860이 아니고...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9.026이 되겠습니다.

○ 김재철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6.860은 신문을 환산한 수치이고, 거기에 방송이 더해지니까 9.026으로 올라갑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9점 얼마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9.026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런 경우에 KBS의, 구체적인 매체를 지칭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영향력 면에서 그것이 상식적으로 설득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환산근거가 어떻게 마련됐는지,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국민의 여론층이나 식자층에게 KBS의 영향력이 31.989이고 조선일보 그룹은 9.026이라고 했을 경우에 저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미디어위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다시 한 번 리뷰(review)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것은 언론의 역할 중의 하나인 아젠다(agenda) 설정이나 문제제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을 봤을 때 환산근거가 조금 더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김재철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현재는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KBS가 가지고 있는 시청점유율과 KBS는 채널이 2개인 데다가 PP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모든 방송채널을 사업자별로 시청점유율로 합산하기 때문에 KBS가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방법론은 현재 법 체계에 따라 하고 있는데 현재의 법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은 별도의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이 수치는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사업자가 225개이고 일간신문이 26개해서 전부 251개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리고 그 사업자들의 시청점유율을 다 합치면 100이 나오는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여기에서는 산정방식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만 가지고 봤을 때 시청점유율 부분은 100이 되는데 거기에 특수관계자 부분이나 신문을 환산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수가 100보다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매체합산한 수치는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것은 다시 전체를 합친 것을 또 다시 모수로 해서 환산을 해야 정확한 251개의 점유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이 합산 전환율을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매체간 합산하는 방식을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 김재철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유일하게 독일이 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독일에서는 이 매체교환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재철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독일에서는 가중치를 정하고 있는데 특정한 조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일단 여러분들이 모여서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신문은 방송의 3분의 2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66%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디오는 텔레비전의 2분의 1로 보고 있고, 인터넷도 2분의 1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잡지 중에 텔레비전잡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7분의 1로 보고 있고, 대중잡지는 10분의 1로 보고 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우리보다도 훨씬 더 기준을 다양화시켜서 환산하는 것입니까?

○ 김재철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 허원제 부위원장

- 우리는 0.4 이것 하나만 적용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방송과 신문만...

○ 허원제 부위원장

-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이 갑니다. 독일도 상한선이 30%입니까?

○ 김재철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상한 30%입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하한은 우리와 같고...

○ 김재철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 허원제 부위원장

- 어쨌든 그것을 통해 매체의 영향력을 얼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세분화시켜 나가면서 정교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지적이 이 안건은 그대로 받아들여지, 앞으로 매체교환율을 산정하는 방법, 특히 매체교환율과 관련해서는 신문매체 이용행태가 과거에 종이로 된 신문의 구독률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신문을 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매체교환율뿐만 아니고 독일의 경우를 참고해서 다양한 방송형태에 따른 각각의 가중치 비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다 나은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결국에는 모수가 100을 넘기 때문에 실제로 31.989%라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백분율로 31.989%인 것으로 오해를 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부터 예를 들어 모수분의 31.989%로 해서 다시 비율을 계산해 내면 2011년, 2012년에 계산한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아까 말씀 드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법을 변경하게 될 때에는 전년도와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 때에는 그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모수에 따른 다시 백분율로 환산하는 것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은 없으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 2가지 정도, 하나는 여쭙 보고 하나는 의견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고삼석 상임위원

- 어제 오후 늦게 보도가 됐고 아침에 제가 언론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건이냐 하면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다' 편에 대해서 방송은 2010년 11월 17일 방송이 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해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 1월 5일 해당 방송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제작진이 불복해서 2011년 3월 28일 제재조치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년이 넘게 걸려서 이것이 지난 6월 1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제재조치처분 취소소송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2일 날 '방송통신위원회' 이름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현재의 심의, 행정제재 시스템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논의를 했고,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니다만 제가 알기로 이 사안은 당시에 정치심의를 했다는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3년 이상 끌어 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심의와 행정제재하는 시스템을 재검토하는 것과 별개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단순히 받아들여서 항소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러한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 한 번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느냐는 생각에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보도된 대로 항소를 결정하신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별도의 말씀이 있으셨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현행과 같은 구조 하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저희가 그대로 처분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명의를 방송통신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그 처분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몇 가지 사유를 이야기하면서 항소하기를 희망해서 항소에 이른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지난 2일에도 이야기가 되었던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현상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 바람직한 방안을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항소 부분은 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지만 아마 위원님들께 그 부분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항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 고삼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BC 문제에 대해서 짧게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공성 실현에 책임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MBC는 공영방송으로 분류가 됩니다. 공영방송이라 함은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공성·공정성을 성실하게 구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MBC의 행태를 보면 과연 MBC가 공영방송이냐 하는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며칠 전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 보고에 언론자유를 거론하면서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MBC를 방문해서 ‘MBC는 국정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석하여 죄값을 치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6월 27일 서울남부지법은 2012년 170일 파업을 이유로 해직된 정용하 전 노조위원장 등 6명에 대해서 항소심 선고 시까지 근로자로서의 임시 지위 등을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MBC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보내 왔습니다. 제가 두 차례에 걸쳐 MBC의 책임 있는 입장, 답변을 요청했는데도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국회의 출석요구와 법원의 판결마저 거부하고 있는 MBC가 과연 공영방송인지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MBC가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방송인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방패삼아 공적책무를 회피하고, 경영진의 잘못을 넘는 행태를 계속 방지해야 하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지 저는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로 하여금 MBC의 공적책무를 실현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MBC에 대한 1차적 감독책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과 감사에 대한 임명권 행사를 통해 MBC의 공적책임과 공공성 실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법 제10조는 위원회로 하여금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방송의 공적책무와 공공성 실현 가능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에 대한 위원회의 관리감독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의 마지막에 이 사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공적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이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꼭 해당 방송사나 신문사의 구성원들의 자유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책무 이러한 것들이 저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국회 출석을 거부하거나 법원 판결을 거부함으로써 공적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독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기회에 한 번 위원님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재홍 상임위원

- 고삼석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그저께 국정조사를 실시간으로 국회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관보고를 했고, 허원제 부위원장께서 조사받는 증인이었지요. 하루 종일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MBC 측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서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방통위 부위원장께 “MBC가 여기에 안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물었지요? 괜찮은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더 따져 봐야겠지만 국민의 눈에서 또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대해서 감독규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언론의 자유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언론의 자유를 외적으로 MBC 경영진과 고위 간부들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방패막이

로 하면서 내적으로는 그 회사 내부에서는 기자들에 대해 해직, 정직, 감봉, 또 업무배제, 심지어 법원에서 판결난 것까지도 출근을 거부하는 사태입니다. 말하자면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려면 자신들의, 고위 간부들의 외적 자유뿐만 아니라 기자들의 내적 자유, 양심의 자유를 수호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아전인수 쪽으로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사업자 평가대상 항목 중의 하나인 내용과 편성과 운영이 있는데 우리가 그 방송사업자가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직무를, 근거를 찾아서라도 3년 뒤에는 재허가 심사를 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중간 과정에서도 국회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국회는 또 우리에게 그럴 만한 직무가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은 논의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날짜는 다음 주에 결산 국회 일정이 화·수·목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날짜를 현재로서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결산상황을 보고, 다음 회의날짜는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7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35분 폐회 】